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338
------------	------

제출년월일 : 2025년 10월 18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이며, 위탁기간이 '26. 5. 31.자로 만료될 예정임

나. 소각시설 운영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

나. 위탁기간 : 3년 ('26년 6월 1일 ~ '29년 5월 31일)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필요성

-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 등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전력 생산 및 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의 설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라. 시설개요

- 시설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 부지면적 : $16,914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 × 2기)
- 처리권역 : 3개 자치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발전설비 등

마. 위탁기간 : 3년 ('26.06.01. ~ '29.05.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비정산비 기준) : 21,608백만원('26. 6.~'29. 5.)

(1차년도 : 6,996백만원, 2차년도 : 7,201백만원, 3차년도 : 7,411백만원)

아. 기대효과

- 폐기물 소각 및 자원회수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의 전문지식, 기술력, 설비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성능 유지 가능
- 계약에 따른 성과지표(성과관리 기준 등)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 자원회수시설 운영이라는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민간에 맡김으로써, 서울시는 정책 수립 및 감독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음

자. 2025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5.09.2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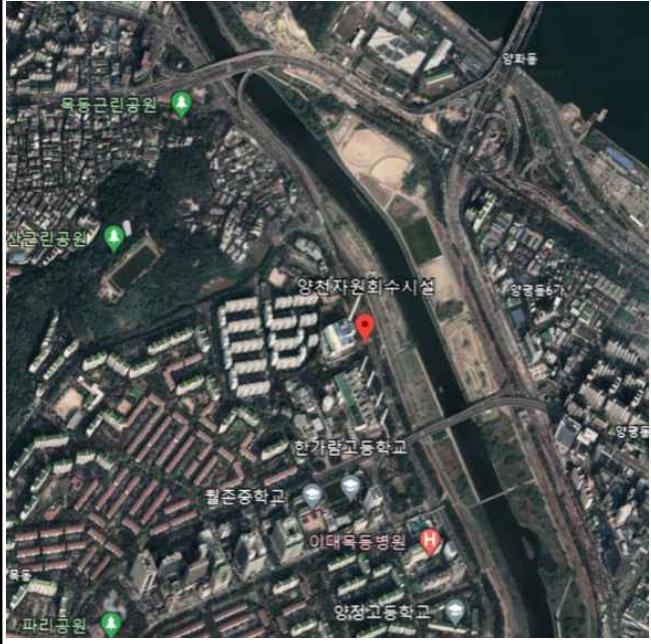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이수연(☎2133-3682)

- 시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시설 위치	시설 전경